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57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5732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52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52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65. 6. 17. 접수 제17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82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섭, 판사 백장미, 판사 김수현